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포항시보

제785호 2010. 6. 22(화)

- 부시장지시사항..... 2
- ◀ 고 시 ▶
- 포항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변경 고시(제2010-51호) 5
- 포항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제2010-52호) 8
- 포항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제2010-53호) 10
- 지적측량기준(삼각보조,도근)점 성과고시(남구 고시 제2010-13호).....11
- ◀ 공 고 ▶
- 포항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제2010-646호)..... 13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위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제2010-651호) 17

회 람								
--------	--	--	--	--	--	--	--	--

부시장 지시(훈시)사항

- 2010. 6. 21(월) 간부회의 -

관 리 번 호	지 시 내 용	주관부서
<p>훈 시 (6. 2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면 업무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민체전 준비 등을 비롯한 각종 행사와 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은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 세외수입 및 지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기바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외수입 체납액이 400억 정도 되는데 지방세와 함께 징수 및 정리에 박차를 가하고, 징수불능 및 시효경과분 등에 대해서는 과감한 정리와 조치를 하기바람. ○ 향후 각종 표창 및 시상 등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인사가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람. ○ 포항IC ~ 영일만항 구간 등 각종 시설물 및 환경정비 철저히 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 구간내 지반침하, 요철부분에 대해 부실 등을 철저히 점검하여 보수조치 후에 시공업체와 인계인수를 하기 바람. - 각종 도로표지판 등을 정비바람. (‘포항’ → ‘00동’ 표시) - 진·출입로 및 램프구간에 잡초를 제거 및 조경(꽃심기)가꾸기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 ○ 시 경계지역(경주, 영덕 진입지역)을 비롯한 시가지 진 	<p>전 부 서</p> <p>재정관리과 남·북구청 (읍 면 등)</p> <p>전 부 서 자치행정과</p> <p>건 설 과 공원관리사업소 도시계획과 도시녹지과 남·북구청 읍 면 등</p> <p>전 부 서</p>

관 리 번 호	지 시 내 용	주관부서
<p>훈 시 6. 21</p>	<p>입구간에 잡초제거 및 환경정비를 철저히 하기 바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산강 제방 및 둔치, 운동시설 주변의 잡초를 제거하기 바람. ○ 앞으로 간부공무원은 현장행정에 보다 관심을 두고 추진하시기 바람. ○ 관광지 및 피서지 등 편의시설 점검 및 정비 철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름철 불빛축제 등 큰 행사 및 휴가철, 등산객 증가 등으로 피서지 및 관광지, 인근 주요 등산로에 많은 인파가 찾고 또한 찾아올 것으로 예상되는 바, - 화장실, 샤워장 등의 청결유지 및 편의시설 정비에 철저를 기하고 특히, 화장실 청결유지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람.(보경사 보현암 화장실 등) ○ 해도공원의 잔디보호를 위해서 휴식기간이 필요하니 앞으로 행사 등을 자제토록 바람. ○ 6.25 60주년 행사준비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람. ○ 각 부서는 사업현장을 집중 점검하여 미비사항에 대해 대책을 강구 추진 바람. ○ 예산조기집행에 철저를 기할 것. ○ 일자리 창출에 철저를 기할 것. ○ 도민체전 대비 위생점검 실시로 식중독 사전 예방과 물비누 공급 및 사용 홍보에 적극 노력 바람. 	<p>(도시녹지과) (남·북구청) 재난안전과·남·북구청</p> <p>전 부 서</p> <p>관광진흥과 공원관리사업소 수산진흥과 남·북구청 (읍 면 동)</p> <p>도시녹지과 공원관리사업소</p> <p>저출산고령화대책과</p> <p>전 부 서</p> <p>전 부 서 기획예산과 전 부 서 경제노동과 환경위생과 (남·북구청)</p>

관 리 번 호	지 시 내 용	주관부서
<p>훈 시 6. 2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수욕철을 맞아 해초 제거 및 숙박시설·음식점등에 바가지요금이 없도록 적극 지도하기 바람. ○ 포항함 관람객 안전사고 예방 철저 및 관광코스 개발을 검토 추진하기 바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항함을 이용하는 관광코스 개발(북부해수욕장, 죽도 시장 연계 등)을 추진하기 바람, - 특히, 이용객의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안전에 최우선시하여 시설점검 및 조치를 적극 강구하기 바람. ○ 삼죽오와 관련한 이미지 등 문화콘텐츠를 개발하여 각종 문화행사 등에 많이 활용토록 바람. ○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경고 및 안전표지판 등을 확대 설치하기 바람. ○ 흥해 시내버스 간이승강장에 편의시설 설치 및 배차시간표 게시, 승강장 간판을 보다 큰 규격으로 설치 토록 검토 추진바람. ○ 호미곶 돌문어축제를 물회·과메기 등과 함께 전국에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우수기에 앞서 하수도 및 하수구 정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장기면 방향 장승백이재에 사고가 많은데 도로의 직선화를 검토 추진하고, 아울러 각종 공사 작업구간에는 안내표지판 설치를 철저히 할 것. 	<p>환경위생과 해양수산과 남·북구청</p> <p>관광진흥과</p> <p>전 부 서 자치행정과 문화예술과</p> <p>수산진흥과 재난안전과</p> <p>교통행정과</p> <p>홍보담당관실 호미곶면</p> <p>하수도과</p> <p>전 부 서 건설과</p>

고 시

포항 도시계획시설(대로2류36호선)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88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인가 변경하고,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포 항 시 장 박 승 호

2010년 6 월 22 일

포항시 고시 제2010- 51호

포항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변경 고시

- 1. 사업시행지(변경없음)
 - 시 점 : 포항시 북구 흥해읍 죽천리 일원
 - 중 점 :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일원
- 2. 사업의 종류·명칭(변경없음)
 - 종 류 :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 명 칭 : 대로2류36호선
- 3. 사업시행자(변경없음)
 - 포 항 시 장

4. 사업계획 내용(변경없음)

사 업 명	위 치	사 업 내 용	비 고
대로2류 36호선	시점 : 흥해읍 죽천리 산13-30임 종점 : 흥해읍 용한리 661-4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개설 (L=1.9Km, B=30m) • 교차로(2개소) (우목, 용한) 	

5. 사업착수일 : 2009. 01. 12(변경없음)

6. 준공예정일 : 2011. 12. 30(변경없음)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지번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붙임)
(변경 : 붙임 물건조서)

※ 관계 편입토지조서, 도면 등은 포항시청 경제산업국 산업단지지원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산업단지지원과(054-270-38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일만 2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포항 도시계획시설(대로 2류 36호선) 사업-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

<토 지>

포항시 북구 흥해읍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56	우목리	산 14-3	임	40	40	장용수 외5인	북구 두호동 753 우방신천지타운 113동 1809호	방승양	지곡동 산15-3 교수아파트 가동 503호	공유자	변경전					
								김유성	두호동 1086 산호그린1차 201호	공유자						
								이향우	남구 해도동 60-19	공유자						
								정도환	북구 용흥동 77-13	공유자						
								손광자	대구 수성구 황금동 118 신평빌라2차101호	공유자						
새마을 금고	남구 해도동 82-5 (김유성, 이향우 지분)	근저당														
56	우목리	산 14-3	임	40	40	포항시					변경후					
												김유성	북구 두호동 1086 산호그린 1차 201호	장광동 새마을 873-6	포항시 북구 장성동 873-6	근저당
														정영란	포항시 북구 항구동 13 우방비치 108/303	근저당
														이시우	경주시 성건동 655-2	근저당
67	용한리	산 152-4	임	799	799	하행유 외 6인	흥해읍 남성리 243-1	하기수	고양시 일산구 대화동	공유자	변경전					
								하규일	북구 학산동 133	공유자						
								하규필	남구 송도동 436-48 송림아파트 2동 103호	공유자						
								하태중	북구 장성동 866 주공연립주택 14동 205호	공유자						
								하귀자	남구 송도동 447-39	공유자						
								김경철	양산시 물금읍 549 범어택산타운 102/1003	공유자						
								황인성	북구 창포동 611-15	하행유 지분 가처분						
								고창우	오천읍 문덕리 217-5 국민드림빌2차 102동 106호							
67	용한리	산 152-4	임	799	799	포항시					변경후					
												하행유	흥해읍 옥성리 98-6	강일호	남구 대송면 제내3리 250-1	가압류
														하영미	북구 죽도동 62-11 진영골든빌 301호	가압류
		정태준	북구 용흥동 66-1 용흥현대타워2차 201/603	근저당 경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

<지장물>

포항시 북구 흥해읍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면적 또는 수량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1	우목리	315-1	감나무	10년생	2주	이종왕	포항시 북구 득량동 155 삼성푸른아파트 2/1503				
			사철 나무	12년생	9주						
		315-2	산딸 나무		41주						

포항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변경) 하고, 같은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포항시장 박승호

2010. 6. 22.

포항시 고시 제2010 - 52호

포항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1. 사업 시행지 : 포항시 북구 흥해읍 성곡·남송·망천·용한·곡강·우목리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시설)
- 명 칭 : 광로2류7호선(영일만항 배후도로)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주 소 : 포항시 북구 항구동 58-7번지
- 성 명 : 국토해양부 포항지방해양항만청장

4. 사업계획 내용

사 업 명	위 치	사 업 내 용	시행기간	사업시행자
광로2류7호선	포항시 북구 흥해읍 성곡· 남송·망천·용한·곡강· 우목리 일원	○ 당 초 L=9,682km, B=20m (A = 773,098㎡) ○ 변 경 L=9,682km, B=20m (A = 790,404㎡)	○ 당 초 2007. 2. 21 ~ 2009. 12. 31 ○ 변 경 2007. 2. 21 ~ 2010. 12. 31	국토해양부 포항지방해양 항만청장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세

※ 토지조서는 포항시홈페이지(<http://www.ipohang.org>) 고시공고문에 의함

포항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포항시장박승호

2010. 06. .

포항시 고시 제2010 - 53호

포항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 1. 사업시행지 : 포항시 북구 흥해읍 성곡리 1081번지 일원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 명칭 : 소로2류5호선, 소로1류6호선, 소로1류4호선.
-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주소 : 포항시 북구 동빈1가 76-1 동빈상가 2층
 - 성명 : 성곡지구도시개발조합장
- 4. 사업계획 내용

구분	사업명	위치	사업내용	시행기간	사업시행자
당초	소로2류5호선 소로1류6호선 소로1류4호선	포항시 북구 흥해읍 성곡리 1081번지 일원	- 도로 개설 L = 143m B = 8~10m	2008.10.24 ~ 2010.06.27	성곡지구도시개발 조합장
변경				2008.10.24 ~ 2013.06.27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 : 변경사항 없음

6. 공공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변경사항 없음

※ 관계 편입토지조서, 도면등은 포항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도시계획과(☎054-270-347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적측량기준점성과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 제8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포항시 남구 청장

2010년 06월 22일

포항시 남구 고시 제 2010-13 호

지적측량기준(삼각보조, 도근)점 성과고시

측량기준점 명칭및번호	평면직각좌표		표고 (m)	경위도	
	X(m)	Y(m)		경도(L)	위도(B)
지적삼각보조점	4점				
보95	281794.484	237083.573			
보96	281175.52	238827.141			
보97	280863.016	238851.672			
보98	280778.483	237777.962			
지적도근점	21점				
도3439	281713.5	237314.32			
도3440	281643.35	237513.97			
도3441	281545.17	237791.39			
도3442	281448.74	238064.82			
도3443	281352.31	238337.24			
도3444	281267.87	238577.68			
도3445	281045.21	238838.44			
도3446	280844.23	238650.75			
도3447	280825.7	238414.3			
도3448	280798.58	238141.56			
도3449	280779.51	237924.26			
도3450	280862.2	237543.89			

도3451	280946.89	237300.41			
도3452	281037.41	237044.11			
도3453	281112.45	236832.84			
도3454	281150.01	236697.93			
도3455	281228.7	236706.97			
도3456	281377.98	236764.2			
도3457	281325.41	236904.7			
도3458	281486.01	236963.7			
도3459	281686.93	237025.16			
투영원점	동부원점				
소재지 및 표지재질	송정동 포항 제철소 제4 투기장, 표 석 및 철재	송정동 포항 제철소 제4 투기장, 표 석 및 철재	송정동 포항제 철소 제 4투기 장, 표석 및 철재	송정 동 포항 제철소 제4투기 장, 표석 및 철재	
측량연월일	2010. 4.12 / 4.22	2010. 4.12 / 4.22	2010. 4.12 / 4.22		
측량성과보관장소	포항시남구 청 건축지적 과 지적서고 내	포항시남구 청 건축지적 과 지적서고 내	포항시 남구청 건축지 적과 지 적서고 내	포항 시남구 청 건축 지적과 지적서 고내	
비 고					

측량기준점 명칭및번호	평면직각좌표		표고 (m)	경위도	
	X(m)	Y(m)		경도(L)	위도(B)
보99	275691.06	236634.72	11.99	129-24-24.58	35-58-51.17
보100	275106.64	236885.84	15.24	129-24-34.51	35-58-32.17
보101	275485.55	235913.46	50.64	129-23-55.76	35-58-44.59
보102	276136.43	235785.21	24.65	12-23-50.74	35-59-05.73
보103	276145.86	236292.51	11.23	129-24-11.00	35-59-05.97
투영원점	동부원점				
소재지 및 표지재질	원동 제1지구 구획정리지역	원동 제1지구 구획정리지역	원동 제1지구 구획정리 지역		
측량연월일	2010. 4.26				
측량성과보관장소	포항시남구청 건축지적과 지적서고내	포항시남구청 건축지적과 지적서고내	포항시남 구청 건축 지적과 지 적서고내	포항시남구청 건 축지적과 지적서 고내	
비 고					

공 고

『포항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포항시장 박승호

2010년 6월 18일

포항시 공고 제2010 - 646호

포항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리시가 실제 필요로 하는 제안을 보다 많이 받기 위해 제안방식을 보완하고 '08년부터 정부의 역점사업으로 시행해오고 있는 생활공감정책관련 제안제도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생활공감정책 시민제안의 운영근거 마련(안 제8조의2)
- 나. 제안심사결과에 대한 재심요청 절차 신설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7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 : 자치행정과장, 주소 : 포항시 남구 대잠동 1001번지, 전화 : 054-270-2094, 팩스 : 054-270-2070, Email : cws1601@korea.kr)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연락처
- 다. 기타 필요한 사항

붙임 : 포항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포항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포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생활공감정책 시민제안의 발굴 등) ① 시장은 생활공감정책 (우리시 시책 등에 있어 조금만 제도를 개선하면 시민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시민 제안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생활공감정책에 관한 과제를 선정하여 공모제안을 실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년 생활공감정책에 관한 시민 제안을 발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생활공감정책에 관한 시민제안의 활성화에 기여한 사람에 대하여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불채택의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 요청된 제안의 채택여부 결정 및 통지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p>(신 설)</p> <p>제12조(채택여부의 결정)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불채택의 통지를 받은 자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재심을 요청 할 수 있다.</p> <p>③ (생 략)</p>	<p>제8조의2(생활공감정책 시민제안의 발굴 등) ① 시장은 생활공감정책(우리시 시책 등에 있어 조금만 제도를 개선하면 시민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시민제안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생활공감정책에 관한 과제를 선정하여 공모제안을 실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년 생활공감정책에 관한 시민제안을 발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생활공감정책에 관한 시민제안의 활성화에 기여한 사람에 대하여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p> <p>제12조(채택여부의 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불채택의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재심을 요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 요청된 제안의 채택여부 결정 및 통지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p> <p>③ (현행과 같음)</p>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를 부과대상자에게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보관기간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포항시장박승호

2010. 6. 21.

포항시청 공고 제2010- 651호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위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1. 제 목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 2. 공고기간 : 2010. 6. 21 ~ 2010. 7. 5(15일간)
- 3. 공고대상

연번	광고주	주민번호	광고주 주소(소재지)	위반내용	과태료부과 예정금액	반송사유	비고
1	김도영	600414-2*****	포항시 북구 장성동 *****	불법벽보	170,000	보관기간 경과	
2	이승은	621126-2*****	포항시 북구 장성동 *****	불법벽보	119,000	보관기간 경과	
3	박재우	840219-1*****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 *****	불법벽보	136,000	폐문부재	
4	박재우	840219-1*****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 *****	불법벽보	68,000	폐문부재	

- 4.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포항시청 테라노바팀 광고물담당 (☎054-270-236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기간내 별도의 의견이 없을 경우 위의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며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강제 징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